

집합투자규약 변경 대비표

- 투자신탁 명칭 : 마이트리플스타증권투자신탁[주식]
- 규약변경 내용 :
 - 1) 판매보수 인하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안 적용
 - 3) 오기 정정

조 항	변경 전	변경 후								
제 2 조(용어의 정의)	1. 생략 2. “증권투자신탁”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의 100분의 50 을 초과하여 증권(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증권을 제외하며,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증권 외의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으로서 부동산투자신탁 및 특별자산투자신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투자신탁을 말한다. 3. “개방형투자신탁”이라 함은 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을 말한다. 4. “추가형투자신탁”이라 함은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을 말한다. 5. “종류형투자신탁”이라 함은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투자신탁을 말한다.<신설 2009.05.25.> 6~7.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증권형”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의 100분의 50 을 초과하여 증권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변경 2010.10.25.> 3. “개방형”이라 함은 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을 말한다. <변경 2010.10.25.> 4. “추가형”이라 함은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을 말한다. <변경 2010.10.25.> 5. “종류형”이라 함은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변경 2010.10.25.> 6~7. 현행과 같음								
제 3 조(투자신탁의 명칭 및 종류)	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투자신탁으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류 A 수익증권 : 납입금액에 제한이 없고, 선취판매수수료(납입금액의 100 분의 0.5)를 징구하는 종류형 수익증권<신설 2009.05.25.> 2. 종류 A-e 수익증권 : 납입금액에 제한이 없	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투자신탁으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15%;">구분</th> <th style="width: 15%;">투자금액 및 투자자 자격</th> <th style="width: 15%;">선취판매 수수료 부과여부</th> <th style="width: 15%;">환매수수료 부과여부</th> </tr> </thead> <tbody> <tr> <td>종류 A</td> <td>제한 없음</td> <td>있음(제</td> <td>해당사항</td> </tr> </tbody> </table>	구분	투자금액 및 투자자 자격	선취판매 수수료 부과여부	환매수수료 부과여부	종류 A	제한 없음	있음(제	해당사항
구분	투자금액 및 투자자 자격	선취판매 수수료 부과여부	환매수수료 부과여부							
종류 A	제한 없음	있음(제	해당사항							

<p>고, 선취판매수수료(납입금액의 100분의 0.5)를 징구하며,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인(On-Line))을 통한 가입자에 한해 가입할 수 있는 종류형 수익증권<신설 2010.01.11.></p> <p>3. 종류 C1 수익증권 : 납입금액에 제한이 없는 종류형 수익증권<변경 2010.01.11.></p> <p>4. 종류 C2 수익증권 : 종류 C1 수익증권 1년 이상 가입 시 자동 전환되는 종류형 수익증권 <변경 2010.01.11.></p> <p>5. 종류 C3 수익증권 : 종류 C2 수익증권 1년 이상 가입 시 자동 전환되는 종류형 수익증권 <변경 2010.01.11.></p> <p>6. 종류 C4 수익증권 : 종류 C3 수익증권 1년 이상 가입 시 자동 전환되는 종류형 수익증권 <변경 2010.01.11.></p> <p>7. 종류 C-e 수익증권 :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인(On-Line))를 통한 가입자에 한해 가입할 수 있는 종류형 수익증권<변경 2010.01.11.></p> <p>8. 종류 C-W 수익증권 :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한 가입자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는 종류형 수익증권<변경 2010.01.11.></p> <p>9. 종류 C-F 수익증권 : 가. 집합투자기구 나. 전문투자자로서 50억 이상 가입한 자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는 종류형 수익증권<변경 2010.01.11.></p>			40조 참조)	없음
	종류 A-e	온라인 가입자	있음(제40조 참조)	해당사항 없음
	종류 C1	제한 없음	해당사항 없음	있음(제41조 참조)
	종류 C2	종류 C1 수익증권 1년 이상 보유 수익자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종류 C3	종류 C2 수익증권 1년 이상 보유 수익자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종류 C4	종류 C3 수익증권 1년 이상 보유 수익자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종류 C5 <신설 2010.10.25>	종류 C4 수익증권 1년 이상 보유 수익자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종류 C-e	온라인 가입자	해당사항 없음	있음(제41조 참조)
	종류 C-W	판매회사 Wrap 계좌를 보유한 자	해당사항 없음	있음(제41조 참조)
	종류 C-F	가. 집합투자기구 나. 전문투자자로서 50억 이상	해당사항 없음	있음(제41조 참조)

		가입자		
		<변경 2010.10.25.>		
제 4 조(집합 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p>①~② 생략</p> <p>③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지시에 관한 방법 및 절차, 각종 세금 및 공과금의 공제업무 기타 신탁업자의 수탁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등으로서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 사이에 <u>별도로 정할 수 있다.</u> 다만, 이 신탁계약과 위 약정 사이에 상충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 신탁계약이 우선한다.</p>	<p>①~② 생략</p> <p>③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지시에 관한 방법 및 절차, 각종 세금 및 공과금의 공제업무 기타 신탁업자의 수탁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등으로서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 사이에 <u>별도로 체결되는 약정으로 정할 수 있다.</u> 다만, 이 신탁계약과 위 약정 사이에 상충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 신탁계약이 우선한다. <변경 2010.10.25.></p>		
제 6 조(신탁 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총좌수)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의 가액은 1 좌당 1 원을 기준으로 제 30 조에서 정한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적용하며, 설정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총 좌수는 <u>10 조</u> 좌로 한다. <변경 2009.05.25.>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의 가액은 1 좌당 1 원을 기준으로 제 30 조에서 정한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적용하며, 설정할 수 있는 수종의 수익증권의 총 좌수는 10 조 좌로 한다. <변경 2010.10.25.>		
제 7 조(추가 신탁)	집합투자업자는 제 6 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 의 총좌수의 범위 내에서 추가설정을 할 수 있으며, 추가설정의 규모 및 시기 등은 집합투자업자가 결정하되, 관련 절차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집합투자업자는 제 6 조의 규정에 의한 수종의 수익증권 의 총좌수의 범위 내에서 추가설정을 할 수 있으며, 추가설정의 규모 및 시기 등은 집합투자업자가 결정하되, 관련 절차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변경 2010.10.25.>		
제 10 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p>① 집합투자업자는 제 6 조 및 제 7 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변경 2009.05.2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종류 A 수익증권<신설 2009.05.25.> 2. 종류 A-e 수익증권<신설 2010.01.11.> 3. 종류 C1 수익증권<변경 2010.01.11.> 4. 종류 C2 수익증권<변경 2010.01.11.> 5. 종류 C3 수익증권<변경 2010.01.11.> 6. 종류 C4 수익증권<변경 2010.01.11.> 7. 종류 C-e 수익증권<변경 2010.01.11.> 8. 종류 C-W 수익증권<변경 2010.01.11.> 9. 종류 C-F 수익증권<변경 2010.01.11.> <p>②~⑤ 생략</p>	<p>① 집합투자업자는 제 6 조 및 제 7 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변경 2009.05.2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종류 A 수익증권<신설 2009.05.25.> 2. 종류 A-e 수익증권<신설 2010.01.11.> 3. 종류 C1 수익증권<변경 2010.01.11.> 4. 종류 C2 수익증권<변경 2010.01.11.> 5. 종류 C3 수익증권<변경 2010.01.11.> 6. 종류 C4 수익증권<변경 2010.01.11.> 7. 종류 C5 수익증권<신설 2010.10.25.> 8. 종류 C-e 수익증권<변경 2010.01.11.> 9. 종류 C-W 수익증권<변경 2010.01.11.> 10. 종류 C-F 수익증권<변경 2010.01.11.> <p>②~⑤ 현행과 같음</p>		
16 조(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법 제 4 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중 <u>주권을</u> 법 시행령 제 94 조 제 2 항 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주권 등의 가치 상승에 따른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투자신탁은 법 제 4 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중 주식 을 법 시행령 제 94 조 제 2 항 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변경 2010.10.25.>		

<p>제 17 조(투자대상자산 등)</p>	<p>1. 법 제 4 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주권, 신주 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 이 발행한 출자증권(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발행한 것에 한한다. 다만,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위한 것과 유가증권 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공모증자를 위한 것을 포함한다.)(이하 “지분증권”이라 한다)<2008. 10. 22. 변경></p> <p>2. 법 제 4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2008. 10. 22. 변경>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 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이하 “채무증권”이라 한다)</p> <p>3. 법 제 4 조 제 3 항의 기업어음증권(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으로서 법 시행령 제 4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및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으로서 신용등급이 A2- 이상인 것<2008. 10. 22. 변경>(이하 “어음”이라 한다)</p> <p>4.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이하 “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한다.)</p> <p>5. 법 제 5 조의 규정에 의해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가지수선물, 주가지수옵션, 주권옵션, 코스닥지수선물, 코스닥지수옵션, CD 금리선물, 통안증권금리선물, 국채선물 및 국채선물옵션(이하 “주권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p> <p>6. 금리스왑거래</p> <p>7. 법 제 110 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 189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및 법 제 196 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권(이하 “수익증권 등”이라 한다)</p> <p>8.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투자증권의 대여</p> <p>9. 환매조건부 매도</p>	<p>1. <u>법 제 4 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중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과 법 제 4 조 제 8 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 9 조 제 15 항 제 3 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에 한한다) (이하 “주식”이라 한다) <변경 2010.10.25.></u></p> <p>2. <u>법 제 4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이하 “채권”이라 한다) <변경 2010.10.25.></u></p> <p>3. <u>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 4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신용등급이 A2- 이상인 것에 한한다) (이하 “어음등”이라 한다) <변경 2010.10.25.></u></p> <p>4. <u>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이하 “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한다) <변경 2010.10.25.></u></p> <p>5. <u>법 제 5 조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 및 채권 관련 장내파생상품(이하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 <변경 2010.10.25.></u></p> <p>6. <u>현행과 같음</u></p> <p>7. <u>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 9 조 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 등”이라 한다) <변경 2010.10.25.></u></p> <p>8. <u>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u>의 대여 <변경 2010.10.25.></p> <p>9. <u>환매조건부 매도(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u></p>
-------------------------	---	---

	<p>10. 법 시행령 제 268 조 제 3 항 제 1 호에 따른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p>	<p>같음) <변경 2010.10.25.> 10. 현행과 같음</p>
<p>제 18 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p>	<p>1.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 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으 로 한다.<2008. 10. 22. 변경> 2. 채무증권 중 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 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3~5. 생략 6. <u>수익증권</u> 등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 이하로 한다. 다만, 법 제 234 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 하여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 이하까지 투자 할 수 있다. <변경 2010.10.25.> 7. 생략 8. 주권 및 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의 거래는 거래 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이 투자신탁 자산총 액의 15% 이하가 되도록 한다. 9. 생략</p>	<p>1. 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 상으로 한다. <변경 2010.10.25.> 2. 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 하로 한다. <변경 2010.10.25.> 3~5. 현행과 같음 6. 집합투자증권 등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 액의 5% 이하로 한다. 다만, 법 제 234 조의 규 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에 대하여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 이하까지 투자할 수 있다. <변경 2010.10.25.> 7. 현행과 같음 8.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 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가 되도록 한다. <변경 2010.10.25.> 9. 현행과 같음</p>
<p>제 19 조(운 용 및 투자 제한)</p>	<p>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 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 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 84 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 관계인(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 및 계열회사는 제 외한다)에게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행위 2.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 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 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 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 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 69 조에 따른 한국 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 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 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제 2 호 가목의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p>	<p>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 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 84 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 관계인에게 다음 각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 관계인과는 다음 각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 다. 가. 법 제 83 조제 4 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 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 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 80 조제 3 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 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 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포함 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 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과 지 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p>

<p>한 어음[법 제 4 조 제 3 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이하"기업어음증권"이라고 한다) 및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 31 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사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p> <p>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의 시가총액 비중(매일의 당해 지분증권의 증가의 총액을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증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 월간 평균한 비율을 말한다)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 비중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 월간 적용한다.</p> <p>3.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p>있다.</p> <p>가. <u>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 69 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u></p> <p>나. <u>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 4 조 제 3 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으로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u></p> <p>다. <u>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에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비중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 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 개월간 적용한다.</u></p> <p>3. <u>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u></p> <p>가. <u>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u></p> <p>나. <u>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u></p>
---	---

	<p>4.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거래에 따르는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 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p> <p>5.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 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 다만,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은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매 1 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그 매 1 월(매 1 월이 되는 날 전에 투자신탁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의 매일의 위험평가액을 산술 평균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p> <p>6.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을 포함한 투자신탁재산 총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를 초과하는 행위</p> <p>7.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계열회사가 발행한 주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주권의 시가총액비중의 합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주권가액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투자할 수 있다.</p> <p>8. 현행과 같음</p>	<p><u>다.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u></p> <p><u>라.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 80 조제 10 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u></p> <p><u>4.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u></p> <p><u>5. 법 시행령 제 86 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u></p> <p><u>6.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 분의 100 을 초과하는 행위</u></p> <p><u>7.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동일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변경 2010.10.25.></u></p> <p>8. 현행과 같음</p>
<p>제 20 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p>	<p>① 생략</p> <p>1~4. 생략</p> <p>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 1 항 1 호 내지 제 3 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p> <p>②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 투자신탁의 일부 해지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 18 조 제 6 호 내지 제 9 호, 제 19 조 제 1 호 내지 제 6 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 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p>	<p>① 현행과 같음</p> <p>1~4. 현행과 같음</p> <p>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u>제 18 조 1 호 내지 제 3 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변경 2010.10.25.></u></p> <p><u>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 18 조 제 6 호 내지 제 9 호, 제 19 조 제 1 호 내지 제 6 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 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u></p> <p><u>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u></p>

	<p>③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1월간은 제 18 조 제 9 호, 제 19 조 제 2 호 본문, 제 4 호 및 제 5 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 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변경 2010.10.25.></p> <p>③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1월간은 제 18 조 제 9 호, 제 19 조 제 2 호 본문, 제 6 호 및 제 7 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변경 2010.10.25.></p>
<p>제 23 조(운용행위 감시 의무 등)</p>	<p>①~③ 생략 ④ 신탁업자는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신탁계약에 부합하는지 여부 2. 법 제 88 조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3. 법 제 238 조 제 1 항에 따른 투자신탁재산평가가 공정한지 여부 4. 법 제 238 조 제 6 항에 따른 기준가격의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등</p> <p>이하 생략</p>	<p>①~③ 생략 ④ 신탁업자는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계약에 부합하는지 여부 2. 제 88 조제 1 항·제 2 항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3. 제 93 조제 2 항에 따른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4. 제 238 조제 1 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 5. 제 238 조제 6 항에 따른 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6. 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7.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변경 2010.10.25.></p> <p>이하 현행과 같음</p>
<p>제 25-1 조 (수익증권의 전환)</p>	<p>① 생략 1~3. 생략</p>	<p>① 생략 1~3. 생략 4. 종류 C4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종류 C5 수익증권으로 전환 <신설 2010.10.25.></p>
<p>제 27 조(환매가격)</p>	<p>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실질수익자의 경우 제 21 조 제 4 항의 규정에 따라 - 이하 생략</p>	<p>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실질수익자의 경우 제 26 조 제 4 항의 규정에 따라— 이하 생략 <변경 2010.10.25.></p>
<p>제 33 조(이익분배)</p>	<p>① 생략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u>금전으로 분배한다.</u></p>	<p>① 현행과 같음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u>금전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한다.</u> <변경 2010.10.25.></p>

<p>제 37 조(수익자총회)</p>	<p>①~⑦ 생략</p> <p>⑧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제 3 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수익자총회의 회의 개시 예정시각에서 1 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날부터 2 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한다. <변경 2009.05.25.></p> <p>⑨ 생략</p>	<p>①~⑦ 현행과 같음</p> <p>⑧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제 4 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수익자총회의 회의 개시 예정시각에서 1 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날부터 2 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한다. <변경 2010.10.25.></p> <p>⑨ 생략</p> <p>⑩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총회는 제 4 항, 제 6 항, 제 8 항 및 제 9 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는 “발행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 본다. <신설 2010.10.25.></p>
<p>제 39 조(보수)</p>	<p>①~③ 1~3. 생략</p> <p>4. 종류 C2 수익증권<변경 2010.01.11.> 가. 집합투자업자 보수율 : 연 1,000 분의 7.0 나. 판매회사 보수율 : 연 1,000 분의 13.5 다. 신탁업자 보수율 : 연 1,000 분의 0.3 라.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율 : 연 1,000 분의 0.2</p> <p>5. 종류 C3 수익증권<변경 2010.01.11.> 가. 집합투자업자 보수율 : 연 1,000 분의 7.0 나. 판매회사 보수율 : 연 1,000 분의 12.1 다. 신탁업자 보수율 : 연 1,000 분의 0.3 라.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율 : 연 1,000 분의 0.2</p> <p>6. 종류 C4 수익증권<변경 2010.01.11.> 가. 집합투자업자 보수율 : 연 1,000 분의 7.0 나. 판매회사 보수율 : 연 1,000 분의 10.8 다. 신탁업자 보수율 : 연 1,000 분의 0.3 라.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율 : 연 1,000 분의 0.2</p> <p>7. 종류 C-e 수익증권<변경 2010.01.11.> 가. 집합투자업자 보수율 : 연 1,000 분의 7.0 나. 판매회사 보수율 : 연 1,000 분의 12.0 다. 신탁업자 보수율 : 연 1,000 분의 0.3 라.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율 : 연 1,000 분의 0.2</p> <p>8. 종류 C-W 수익증권<변경 2010.01.11.> 가. 집합투자업자 보수율 : 연 1,000 분의 7.0</p>	<p>①~③ 1~3. 현행과 같음</p> <p>4. 종류 C2 수익증권<변경 2010.10.25.> 가. 집합투자업자 보수율 : 연 1,000 분의 7.0 나. 판매회사 보수율 : 연 1,000 분의 13.2 다. 신탁업자 보수율 : 연 1,000 분의 0.3 라.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율 : 연 1,000 분의 0.2</p> <p>5. 종류 C3 수익증권<변경 2010.10.25.> 가. 집합투자업자 보수율 : 연 1,000 분의 7.0 나. 판매회사 보수율 : 연 1,000 분의 11.8 다. 신탁업자 보수율 : 연 1,000 분의 0.3 라.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율 : 연 1,000 분의 0.2</p> <p>6. 종류 C4 수익증권<변경 2010.10.25.> 가. 집합투자업자 보수율 : 연 1,000 분의 7.0 나. 판매회사 보수율 : 연 1,000 분의 10.6 다. 신탁업자 보수율 : 연 1,000 분의 0.3 라.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율 : 연 1,000 분의 0.2</p> <p>7. 종류 C5 수익증권<변경 2010.10.25.> 가. 집합투자업자 보수율 : 연 1,000 분의 7.0 나. 판매회사 보수율 : 연 1,000 분의 9.6 다. 신탁업자 보수율 : 연 1,000 분의 0.3 라.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율 : 연 1,000 분의 0.2</p> <p>8. 종류 C-e 수익증권<변경 2010.10.25.> 가. 집합투자업자 보수율 : 연 1,000 분의 7.0</p>

	<p>나. 판매회사 보수율 : 연 1,000 분의 0.0 다. 신탁업자 보수율 : 연 1,000 분의 0.3 라.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율 : 연 1,000 분의 0.2</p> <p>9. 종류 C-F 수익증권<변경 2010.01.11.> 가. 집합투자업자 보수율 : 연 1,000 분의 7.0 나. 판매회사 보수율 : 연 1,000 분의 0.3 다. 신탁업자 보수율 : 연 1,000 분의 0.3 라.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율 : 연 1,000 분의 0.2</p>	<p>나. 판매회사 보수율 : 8-1 의 규정 다. 신탁업자 보수율 : 연 1,000 분의 0.3 라.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율 : 연 1,000 분의 0.2</p> <p>8-1. 해당 수익증권의 판매회사 보수율은 아래 일정에 따라 변경한다.</p> <table border="1" data-bbox="890 448 1445 837"> <thead> <tr> <th>기간</th> <th>보수</th> </tr> </thead> <tbody> <tr> <td>2010.10.25 ~ 2011.10.24</td> <td>연 1,000분의 [11.40]</td> </tr> <tr> <td>2011.10.25 ~ 2012.10.24</td> <td>연 1,000분의 [10.80]</td> </tr> <tr> <td>2012.10.25 ~ 2013.10.24</td> <td>연 1,000분의 [10.20]</td> </tr> <tr> <td>2013.10.25 ~</td> <td>연 1,000분의 [9.60]</td> </tr> </tbody> </table> <p><변경 2010.10.25.></p>	기간	보수	2010.10.25 ~ 2011.10.24	연 1,000분의 [11.40]	2011.10.25 ~ 2012.10.24	연 1,000분의 [10.80]	2012.10.25 ~ 2013.10.24	연 1,000분의 [10.20]	2013.10.25 ~	연 1,000분의 [9.60]
기간	보수											
2010.10.25 ~ 2011.10.24	연 1,000분의 [11.40]											
2011.10.25 ~ 2012.10.24	연 1,000분의 [10.80]											
2012.10.25 ~ 2013.10.24	연 1,000분의 [10.20]											
2013.10.25 ~	연 1,000분의 [9.60]											
<p>제 45 조(투자신탁의 해지)</p>	<p>① 생략 1~2. 생략 3.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00억 원에 미달하는 경우</p> <p>② 생략 ③ 제 1 항 제 2 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제 49 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p>	<p>①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4.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변경 2010.10.25.></p> <p>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신설 2010.10.25.></p> <p>④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변경 2010.10.25.></p>										
<p>제 49 조(금전차입 등의 제한)</p>	<p>신설</p>	<p>제49조(금전차입 등의 제한)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p> <p>1. 제26조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청구가 대량으</p>										

		<p>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환매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p> <p>2. 제38조에 따른 매수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매수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p> <p>②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재산 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③ 제1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p> <p>④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 중 금전을 대여(제17조 제2항 제1호의 단기대출을 제외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재산으로 이 투자신탁 외의 자를 위하여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0.10.25.></p>
제 50 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①~⑦ 생략	<p>①~⑦ 생략</p> <p>⑧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9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⑨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9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법 제239조의 규정에 따른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1.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p> <p>2.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p> <p>3. 이 투자신탁의 해지 또는 해산 <신설 2010.10.25.></p>
부 칙 [7]		제 1 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0년 10월 25일부터 시행, 적용한다